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양부남의원 대표발의)

의안 8945 번호

발의연월일: 2025. 3. 14.

발 의 자 : 양부남 • 권향엽 • 김한규

김현정 • 민형배 • 박균택

안도걸 • 이광희 • 이해식

전진숙 · 정진욱 · 채현일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의무화하면서도 등록요건에 대한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대외적 구속력 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,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 실태 점검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, 실태점검을 거부·회피 또는 관련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는 등록취소 및 재등록을 6개월간 제한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관리·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(안 제8조의9제5항 신설).

- 나.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실태점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, 그 요구를 받은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함(안제8조의9제6항 신설).
- 다.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거나 실태점검을 거부·회피하는 경우 또는 제6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,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음(안 제8조의9제7항제3호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9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관한 실태 점검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직접 실태 점검을 실시하거나 이를 대행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.
- 1. 정기 점검 : 연 1회
- 2. 수시 점검 :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관할 선거여론조 사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- ⑥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관(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, 그 요구를 받은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한다.

제8조의9제7항(종전의 제5항)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선거여

론조사기관(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)"을 "선거여론조사기관"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제3호"를 "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, 제4호"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6항)중 "그 밖에"를 "제6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의 방법과 자료의 범위, 그 밖에"로 한다.

3. 제5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거부·회피하거나 제6항에 따른 자료제 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

제261조제6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8조의9제5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거부·회피하거나 제6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의9(여론조사 기관・단체의	제8조의9(여론조사 기관・단체의
등록 등) ① ~ ④ (생 략)	등록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
	흥)
<u><신 설></u>	⑤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
	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항
	에 따른 등록요건의 충족 여부
	등에 관한 실태 점검을 하여야
	한다. 다만, 중앙선거여론조사
	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직접
	실태 점검을 실시하거나 이를
	대행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
	회를 정할 수 있다.
	<u>1. 정기 점검 : 연 1회</u>
	2. 수시 점검 : 중앙선거여론조
	사심의위원회 또는 관할 선거
	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필요하
	다고 인정하는 때
<u> <신 설></u>	⑥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
	제5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할 때
	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
	선거여론조사기관(그 대표자 및
	구성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
	에서 같다)에 자료의 제출을 요
	<u>구할 수 있고, 그 요구를 받은</u>

⑤ 선거여론조사기관(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 원회는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 의 등록을 취소한다. 이 경우 제 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등 록을 신청할 수 없다.

1.·2. (생 략) <신 설>

<u>3</u>. (생 략)

⑥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의 서식,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의절차, 등록변경·등록취소 절차,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
제261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) 저 ① ~ ④ (생 략)

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지체	
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.	
⑦ 선거여론조사기관	
<u>제1</u>	
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	
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	
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	
<u>이내에, 제4호</u>	
1.・2. (현행과 같음)	
3. 제5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거	
부・회피하거나 제6항에 따른	
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	
한 경우	
4. (현행 제3호와 같음)	
<u>®</u>	
-제6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의	
방법과 자료의 범위, 그 밖에	
261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)	
① ~ ④ (현행과 같음)	

- ⑤ 삭 제
-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<신 설>

- <u>1</u>.·<u>2</u>. (생 략)
- 4. (생략)
- ⑦ ~ ⑫ (생 략)

- 1. 제8조의9제5항에 따른 실태 점검을 거부·회피하거나 제6 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응 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
- 2.·3. (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)
- 4. (현행과 같음)
- ⑦ ~ ⑫ (현행과 같음)